

< 녹 취 전 문 >

과제명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담자	김현철	면담장소	김양균 변호사 사무실
면담일시	2017. 09. 28.	회차	1회차

1. 임명배경

면담자: 이번 면담은 2017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김양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구술하실 분은 김양균 1기 재판관님이십니다. 구술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면담자는 김현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면담자: 재판관님께서서는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계시던 1988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1기 재판부에서 유일한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임명배경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헌법재판에 작용한 긍정적인 면과 그에 따른 고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술자: 우선 임명 배경은 나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문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검찰의 인사권자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정해창(丁海昌) 법무부장관, 이종남(李種南)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비율로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는 지금도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장관이 상당한 결정력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발탁된 배경을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당시 서울고검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더 상위로 승진할 수 있는 보직을 맡고 있었던 셈이지요. 검찰총장 하위 보직으로 서울고검장외에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차관 등이 같은 비중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위 보직 제임자 중에서 내가 고시(高試)서열이 제일 선배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름대로 몇 가지 덧붙인다면 나는 지방대학이지만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군법무관 요원으로 소집되어 광주육군보병학교 군법무관(JOCS) 2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검사로 임관된 후 초임검사 때 연대 행정대학원(석사 4기)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초임검사 때 소년범죄를 연구하여 그것을 소재로 앞에 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한양대 행정학박사 1호입니다. 위의 행적이 내가 상사로부터 연구하고 노력하는 검사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위 수상경력을 얘기하는 것입

니다. 특히 내가 고등고시를 준비하던 1950년대는 대학의 과목이 고시과목과 겹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나는 고시과목이 아닌 학교과목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고시합격을 목표로 하였지만 우선은 대학을 전체수석으로 졸업하여 모교 법과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겠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지금은 고시 합격자 수가 많아졌지만, 1950년대는 한 도(道)에 몇 명 정도로 합격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시에 합격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9년도에 내가 목적인 대로 전남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그 해에 고등고시 사법과(11회)에도 합격되었는데 나의 광주서중(西中), 광주고등 동기동창 중에 고등고시 사법과는 맨 먼저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던 것입니다. 나의 동기동창 중 서울 법대에만 10명 내외 입학하였고 서울대, 연, 고대에 진학한 동기생이 꽤 많았습니다. 당시 광주고등학교는 전국 5대 명문고에 포함되는 전라도 제 1의 명문고였고 광고출신 인사로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검찰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법사랑위원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 검찰청의 선도위원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1972년도 내가 서울지검(김용제 검사장) 소년전담검사로 일할 당시는 신상필벌주의 때문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런 풍토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소유예의 활용률이 5프로(%)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타의 소년범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사소한 과오를 범한 청소년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범에 대해서 사회에서 선발된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여서 개과천선하면 용서해줌으로써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사범단속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지검(김성재 검사장) 관내의 학생소년을 대상으로 그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는 민간인들이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저질렀을 때 검찰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 연구는 6년 동안 빛을 못 보다가 내가 1978년도에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검사장은 정태균(鄭泰均) 선배님, 그분은 나중에 대법관을 역임하였고, 차장검사는 서동권(徐東權) 선배님, 그분은 나중에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하여 소년선도보호제도를 광주지검에서 시행해보자고 독려해서, 곧바로 광주청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준비된 학생사범처리지침을 토대로 학생소년에 한하지 않고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선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높은 분을 수소문하여 영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제도가 곧바로 전

국검찰의 제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법무부의 브리핑 석상에서 왜 그런 청소년처우제도가 1개 지방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느냐고 지적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내가 연구 또는 창안·건의한 유예선도 방문선도 예방선도 등 소년선도보호 제도가 검찰의 공인제도가 되었고, 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주관하던 선도위원제도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법사랑위원제도로 바뀌어 현재는 공식명칭이 법무부법사랑위원제도입니다. 나는 그 제도의 창안자 또는 창설주무자로서 즉 시 법무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광주의 부장검사 1년 만에 춘천의 차장검사로 승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시동기생들보다 부장검사 진급이 3년 정도 늦어 고시(高試) 3년 후배(14회)가 부장검사로 진급될 때 겨우 부장검사로 승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나를 부장검사로 제때에 시켜주지 않은 보상차원에서인지 또는 그 제도가 괜찮은 제도라고 평가되어서인지는 몰라도 부장검사 1년 만에 차장검사로 발탁해 주었으니, 내가 그때 우리 동기생 중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79년도입니다. 춘천지검,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서 광주차장으로 근무 중 1981년도에 제주 검사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광주 검사장을 거쳐 부산 검사장 때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되고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되어 근무 중 재판관에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광주고검장 발령을 받고 들어보니까 내가 광주지검·고검에서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검찰의 전 직급을 역임한 1호 사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연한다면 나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으로서 아버님 어머니님 숙부님이 다 독립투사입니다. 어머니님과 숙부님은 건국훈장에족장을 받은 독립투사이시고 아버님은 아직 그런 훈위를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보다 독립운동 행적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6년 전에 아버님의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모아 「憂國之士(항일독립투사반독재인권투사) 方圓 金容煥선생의 살신성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818쪽짜리 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자료를 찾고 있으며 500-600 페이지(page) 정도의 분량이 더 모아져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서가에 꽂혀져 있는 것이 아버님 어머니님의 독립운동에 관련 된 책자들인데 10여년에 걸쳐 내가 고서점(古書店)을 뒤져 찾아낸 자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의 행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1기 헌법재판관으로 막 임명되어 전 재판관이 청와대를 예방하였는데, 노태우(盧泰愚) 대통령께서 나의 어머니님의 3·1의거에 관해 덕담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님은 열다섯 살에 수피아 여학생으로서 광주3·1독립의거에 맨 앞장섰다가 구속기소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독립투사입니다. 광주에 흥학관(興學館)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어머니님 쪽 일가 어른인 최명구(崔命龜) 선생이 회사한 것입니다. 이 지방 민족운동의 총본산이었으며

요즈음 광주에서는 기독교 병원 학교의 최초 도래지인 양림동의 개발과 함께 흥학관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바로 흥학관의 중심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여성야학의 여교사였으며 그 인연으로 독립투사 최흥중(崔興中)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동아일보광주지국의 여성 기자 1호이고 동시에 전남지역 여기자 1호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행적 때문에 금년이 (사)3·1 여성동지회 창립 50주년인데, 4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어머니와 중앙에 있는 다른 어머니(이신애) 두 분이 '3·1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이라는 표제의 학술 발표 대상인물이 되었으며 신영숙 박사의 '崔秀香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과 충효정신'이라는 학술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임숙자 박사 외 회장단 일행이 광주의 부모님 묘소와 영광의 독립투사기념공원을 참배 참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현충일에는 여성부의 전신인 대통령직속여성위원회와 3·1여성동지회가 공동주관하여 어머니의 흉상조각을 광주 조봉동 선산에 건립하였습니다. 나의 검찰 행적 외에 우리 부모님이 독립투사였다는 사실도 재판관 발탁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출신으로서 재판관의 소임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전체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검찰총장부터 초임검사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니 소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더라도 상의할 상대가 있으니 상사가 있고, 부하도 있으며 어떤 돌발 사태에도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김용호)을 내가 천거하였는데, 부산 검사장 때와 서울 고검장 때 사무국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아주 온건 성실하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천거를 했는데,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임용한 것입니다. 현재 초창기에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세로 일을 했던 때인데, 김 차장이 그 기틀을 잘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속비서관 중에서 이재경 비서관은 내가 서울지검 근무 때 부장검사로 모셨던 헌법위원 백광현(白光鉉) 선배님의 추천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일해 온 이 비서관을 그대로 이어 받아 현재의 일을 개척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비서(박수성 신성식) 두 사람은 검찰에서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부하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활용이 다른 재판관보다는 훨씬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나 고충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재판관으로서 소신을 펴는데 있어서 친정인 검찰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은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소신대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당시 그 의견이 문제가 된다면 곧바로 사임하겠다는 마음자세로 일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재임 당시 내가 좀 곤혹스러웠던 적은 더러 있는데 그것은 일부 현재사건에서 후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

기서는 우선 두 가지 사항만 얘기하겠는데, 첫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논의될 때, 나는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현재에서 한 번 더 살피게 되면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그만큼 더 보장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담당한 사건에서 맨 먼저 검찰 불기소처분사건이 인용되어 재수사를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재의 논리는 수사미진인 상태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현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일부 후배들이 그 기미를 알고 “선배님, 불기소사건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는 강한 요청을 하였지만 진정한 검찰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의리, 즉 대의(大義)가 더 크다는 생각에서 후배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검사 작성의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인데 수사기록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나는 검찰 재직시 인신구속을 매우 신중히 하였으며 내가 검사장으로 있는 청의 구속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검사들에게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검사가 정말 유능한 검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그 정도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담자: 예,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술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2. 재판관으로서 자부심 및 소신

면담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수 의견도 꽤 내신 걸로 알려졌는데 재판관으로서의 자부심,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나는 중요한 사건에 소수의견을 더러 냈지만 많이 낸 것은 아닙니다. 현재 1기 재판관 아홉 분 중에 제2지정재판부 소속으로 변정수(卞禎洙) 선배님과, 김진우(金鎭佑) 선배님 두 분을 모시는 구성원이었는데, 제2지정재판부의 두 분이 공교롭게도 한 분은 DJ선생, 한 분은 YS선생 지명으로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집권여당이 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공세적 자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제2지정재판부 구성원으로서 수시로 회합하는 친근한 사이였는데 두 분 모두 참 훌륭한 선배였습니다. 우선 변정수(卞禎洙) 선배님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수호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대단한

선배였습니다. 김진우(金鎭佑) 선배님은 온건 성실하고 박학다식하며 법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식견이 넓어 이분이 모르는 것도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만물박사입니다. 한문에도 조예가 썩 깊은 분입니다. 지정재판부 안건으로 회합을 끝내고 세 사람이 오찬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행적을 잠시 얘기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선배님은 한문으로 추모헌시를 지어주었는데 ‘敬讚 崔秀香 先烈’이라는 제목에 7자씩 8줄의 헌시입니다. 지금 우리 선산에 김 선배님 필적 그대로 돌에 조각되어 있는 데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선배님이 소수의견을 펴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례집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 두 분 선배님의 소수의견에 동참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2지정부로 임기만료 때까지 함께 일하면서 얼굴 한번 붉힌 일 없이 사이도 좋았으며 나는 지금도 두 분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그러함에도 재판상의 소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국가의 존립·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가 최고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신념은 헌법재판관 재임때나 그이전은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25의 동족상잔의 참화 이후에도 아웅산 테러·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테러나 김현희 일당의 칼(KAL)기 폭파사건 등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해코지를 당해왔는데 그 사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강조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지, 민주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할 때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고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할 때 위헌 폐지보다는 조건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동참하였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의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는 최고가치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만 그것을 빙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나의 소신입니다. 요컨대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는 절대 우선가치 내지 최고의 가치이고 그 토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조인의 좌우명으로 평소 ‘공평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공명정대하고 형평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이란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공방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독일의 무기대등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도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러한 토대에서 유죄판결을 끌어낼 수 있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국민감정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 마련이며 강압

수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내 소신이었습니다. 모든 범조인은 항상 공명정대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에 대해서 나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을 종종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인생 12훈(訓)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딱 보고 ‘한 가지가 빠졌다. 이 12가지를 다 실천해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나머지도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한가지를 추가해 준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12훈이 13훈으로 바뀐 것이지요. 범조인은 대부분 어려운 시험공부를 해 고시관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자칫 독선적이기 쉽고 남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로 갓 임관됐을 때 어떤 선배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검찰에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중간 정도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리가 특별히 우수한 사람은 아집과 편견이 있기 마련이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판·검사 등 남의 시비(是非)곡직(曲直)을 가리는 판관(判官)은 중간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중용의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무엇이 옳은 주장인지를 가려낼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제도가 생긴 이래 전국의 수재들은 대부분 서울 법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에서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1등 졸업한 사람 손들어” 하면 거의 전원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고급두뇌의 집중현상 그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철학과(科) 신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화학과 의과 약과등을 지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약대에 진학해서 세계만민을 구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의약품을 발명해내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의 재판관으로서의 자부심은 재판에 임할 때 항상 나의 소신에 충실하였고 그 토대는 공평과 겸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소수의견을 낸 것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 전교조 사건,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 불허 사건, 간통죄 위헌시비 사건 등입니다.

면담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술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은 나를 재판관으로 지명해 준 은인일 뿐만 아니라 테니스(tennis)동호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테니스 도(道)대표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지방자치제도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死文化)상태였습니다. 노태우(盧泰愚)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소위 6·29 선언을 하여 대통령의 선출을 체육관 선거가 아니고 국민이 직접선출하게 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그 공약은 지켜져 왔습니다. 노 대통령 재임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

치단체장의 선거를 1992년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있었고, 대통령은 18일 전에 자치단체장 선거 공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시한은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공고기일을 도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뜻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일을 이렇게 도과해버렸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하는 거지요. 그때 재판관 다수는 여러 가지 논리로 헌법소원의 이익이 없다는 쪽이었고 제2지정재판부의 변정수(卞禎洙) 선배님과 나만 소수의견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판관 7명이 각하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나머지 2명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주문은 각하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관 회의 시작 당초부터,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 때인데 나와 변(卞) 재판관 2명만 소수의견을 펼쳤고 그 것은 선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자는 추후 여·야당의 정치적인 합의로 별도로 정하여졌지만 그것은 별개문제이며 요컨대 법령상 지정되어있는 선거일자를 대통령이 도과해버린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대통령의 그러한 도과행위가 적법한 처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그걸 헌법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노대통령의 6·29선언, 민주적 원탁회의, 보통사람론 등 민주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하여 항상 높이 평가하고 그 점 지금도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1번 대답은 그 정도로 마칩시다.

면담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술자: 전교조 사건이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근로 3권이 보장 되어있고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의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 다만 공무원과 방위산업체의 임직원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공립학교 교원처럼 근로3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노조운동을 한 것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파면처분을 당하자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각하의견이었고 몇 사람이 위헌의견을 냈는데, 나의 위헌의견은 헌법이 명문으로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임직원만 예외로 하였는데 하위 법률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참고로 나는 위헌의견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해야 할 교사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여 단체행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로3권 전부를 박탈해 버린 것은 합헌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적어도 단결권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면담자: 다수의견은 합헌의견이었나요.

구술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합헌이지요.

면담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불허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술자: 안기부가 어떤 공안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했어요.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법원에 준항고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접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법원의 취소선고가 있었는데도 면회를 안 시켜주니까 현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안기부에서는 그때 서야 면회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다수의견은 면회를 허용해 주었으므로 주관적 목적은 달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각하의견이었고, 나는 면회를 신청했을 때 바로 시켜준 것이 아니고 한참 지나서 시켜준 것으로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면회 신청 즉시라는 것이 언제를 의미하냐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당일을 넘기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히 많은 날짜가 넘어가 버린 후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면회를 시켜줬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처사라는 논리입니다. 재판관 3명이 소수의견을 썼는데 나는 두 분의 소수의견에 동참하지 않고 나 혼자 별도로 소수의견을 썼습니다. 나는 안기부는 특수기관이니까 특수기관답게 면회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든지, 면회불허 처사는 불가하다든지 명료한 답을 내놔야지 각하하는 방법으로 비껴가면 장차 동종 사건이 재발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과연 추후에 동종사건이 재발하여 그때 전원일치로 위헌선고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면담자: 예, 맞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통죄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술자: 간통죄가 합헌이나, 위헌이나에 대해 나는 현재결정 이전부터 간통죄는 부도덕한 행위기는 하지만 형벌로 다스릴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 중에 가장 손꼽히는 행위는 아마도 불효막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효막심죄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것이 형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형벌로 다스려야 될 행위는 적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간통죄가 형벌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학자들의 논거는 첫째, 혈통의 순수성 보전 둘째, 부부 친자 중심의 가정과 가족의 질서와 평화유지 셋째, 전통적인 성적 윤리, 도덕의 보호 등이 형법 책에 나오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선 혈통의 순수성 보전이라는 것은 유부녀가 간통하여 남의 자식을 낳는 경우는 딱 들어맞는데, 남자가 출

장 가서 매음부와 간통했다면 혈통의 순수성 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가족의 질서와 평화의 유지인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을 청구해야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정이 해체된 상태에서 형사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윤리 도덕의 보호문제인데 그것은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남성에게 전통적 윤리가치라고 하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先代)에서는 둘째 부인을 공공연히 거느린 가정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통죄는 성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이 적발 단속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체는 그 반대입니다. 천하의 오입쟁이 바람둥이는 아예 적발되지도 않고 평소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어쩌다 탈선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재판관회의 때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옛날 대한변협회장을 했던 모 씨가 당시 유신헌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이 술집주인여자와 연애했다고 해서 간통죄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건후 낙향하여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고, 유신체제 비판세력도 그만큼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모 고위공직자의 부인인 대학교수가 수영장을 다니다가 수영코치와 탈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는 고민 고민하다가 기왕의 과오는 용서하고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수영코치의 부인이 고소를 하여 두 사람이 구속되어버렸습니다. 그 공직자는 사건을 해결하느라 고소인을 달래고 위자료도 상당액 지불하여 겨우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탈선행위를 하였을 때 그 사건을 형사화하지 않으면 재결합의 여지가 있으니, 약간 별거하다가 재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이혼했다가도 재결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되어 버리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어 재결합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간통 행위자의 자녀들의 명예와 앞날의 진로문제입니다. 어떤 간통사건의 경우 자녀 중에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딸이 있었는데 간통사건이 공개됨으로써 혼사는 깨져버리고 그 딸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망가져버렸는데 그 자녀들의 인권침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즘은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간통죄가 살아 있을 당시 검·경에서는 증거인멸 예방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옛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모 장관이 호텔(hotel)에 투숙 취침 중이었는데 밤 열두시가 넘어 경찰의 방수색을 당하였답니다. 경찰관의 말은 “이 방으로 미성년 여자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관은 그런 소녀를 들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었지만 밤중에 호텔 객실의 수색은 경찰권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였으니까 그대로 덮여졌지, 외국의 귀빈이었다면 우리나라 국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간통은 가족회

의나 문중회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1기 재판부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던 날, 나는 아마 한 20년 쯤 지나면 내 의견이 다수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1기 때 간통죄의 위헌의견은 형식상으로는 3대 6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대 8이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란 주장이 아니고 과잉처벌만 위헌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간통죄 자체에 대한 위헌의견은 나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1대 8이었던 위헌의견이 2대 7, 3대 6, 5대 4까지 갔고 최근 7대 2로 위헌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 재판관님 말씀대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다른 주제로.

구술자: 지금 마지막까지 일단 하지?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3. 주심사건 소개 및 재판관 재임 시기에 대한 소회

면담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맡으신 주심 사건 중 결정하게 된 배경, 과정 등에 관해서 국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건이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사건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 국제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건 등을 예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담자: 예, 감사합니다. 불기소 사건은 아까 말씀해주셔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구술자: 사소한 사건에서 아주 귀중한 판례가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묘지와 관련해 군청의 임야대장 또는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출원하였는데 군청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요구한 서류 중에는 군청에 아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헌재가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헌재로서는 출원인의 주장에만 한정될 일이 아니라, 출원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출원인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출원인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헌재에서는 알 권리의 침해로 다루어 될 사건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군청이 민원인의 요청에 불응한 것은 알 권리의 침해가 된다는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위 판례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그 판례를 효시로 나중에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등 주요 판례를 이끌어 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헌재에서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심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불명하고 전심절차를 거치더라도 그에 의해서 권리구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나의 주심사건에서 그런 중요한 판례가 나온 데 대해 나는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결국 인용결정까지 하신 거죠?

구술자: 그렇습니다.

면담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제청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구술자: 이 사건은 은행이 어떤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제 3채권자가 강제경매를 한 것입니다. 그 은행은 근저당권에 의거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던 체납 국세가 돌출하여 국가가 전액 징수해버려 은행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원리금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세 우선징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서는 2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고 나를 포함해서 다수가 위헌의견이어서 위헌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때 정부 측에서는 위 국세우선규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규정이 깨지면 정부가 1년에 8천억부터 1조원 정도의 세수 차질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술자: 양재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초세무서장이 과세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서울고등법원에 세금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토초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세무당국이 기준시가를 임의로 정하고 인상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기준시가가 하락했을 때는 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공평한데 보상은 전혀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지가가 인상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토지가 팔린 것이 아니고 세무당국이 기준시가를 인상해놓고 과세하는 소위 미실현과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위 사건은 위헌의 의심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상 기준시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위헌선언을 하면 토초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과세에도 영향을 미쳐 과세행정에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헌무효로 결정하지 않고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요.

구술자: 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당시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이라고 결정해야지 그런 변형결정이 있을 수 있느냐하고, 일부 재판관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갑론을박 했던 사건인데,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게 하는 것이 세정의 혼란을 막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소임을 다한 셈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합의되어 결국 전원일치의견으로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세정을 배려한 재판을 한 셈입니다.

면담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헌심판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구술자: 도지사, 지금도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지역의 토지거래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충청도 어느 지역 땅을 수천 평 사서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여 상당한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이 되고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보장 취지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대 4의 비율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자유이며, 이 사건 토지거래의 규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의 한 형태일 뿐이다 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소위 토지의 공개념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칙은 4대 5로 위헌의견이 많았으나 6표에 미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면담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4년 9월 14일,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6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고향인 광주로 오셨습니다. 퇴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나는 재판관 재임 6년 동안 재판관 회의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는데, 나의 주장내용이 충의심(忠義心)에 맞는지의 여부를 스스로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충의심(忠義心)이라는 건,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즐겨 쓴 말인데 나 스스로 정의하기를 나라사랑, 겨레사랑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마음, 효도하고 우애하는 마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기(義氣)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의 충의심(忠義心)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선도방안을 만들었는데, 서화백일장제도, 문예백일장제도, 청소년선도대상제도, 청소년선행대상제도 등이며 지금도 광주지검·부산지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한지 23년이 되는데 나는 재판관 재임 중 소신대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나의 소신을 고쳐 쓸 것이 없습니다. 임기만료와 동시에 광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지 얼마 안돼서 DJ선생의 신임을 받고 있는 모 중견국회의원으로부터 광주시장 출마를 권고 받았습니다. 그때

는 DJ선생이 공천하면 생면부지 타향사람이라도 당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시장후보로 천거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의원은 DJ선생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여러 시간 줄라했습니다. “나는 헌법재판관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장 같은 직책은 시정에 경륜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DJ선생을 도와 온 사람 중에서 찾아야지 나는 DJ선생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내가 그런 자리까지 차지하면 정치지망생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느냐”고 끝내 사양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DJ선생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일이고, DJ대통령 재임시 고재유(高在維) 시장으로부터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주비엔날레(Biennale) 이사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J선생이 창립한 새천년국민회의 광주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 시장은 내가 검찰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검찰가족입니다. 두 자리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새천년위원장은 내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에 입문할 뜻도 전혀 없다는 이유로, 비엔날레 이사장은 문화예술계에서 유능한 인사를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엔날레는 차범석(車凡錫) 선생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부위원장이라도 맡아달라고 강청하여 그 요청까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헌법재판관의 직분을 대과없이 종료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공직에 연연하면 현재 때 일까지도 도마에 올려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직은 사양하였지마는 공직과 무관한 사회봉사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광주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 광주시정원로자문회의 의장,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고문직도 맡아 했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잖아요, 그전에 나는 U대회총회에서 대표고문으로 추대된바 있고 대표고문 자격으로 12개의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단을 만들 때 전제조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지원단의 단원은 U대회 측이나 시(市)당국으로부터 차(茶)한 잔도 신세지면 안 된다. 그런 걸 기대할 사람은 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2개의 지원단, 천여 명이 모여져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또 종합적 1위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메르스(MERS)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어 1등할 만한 선수들이 더러 불참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3등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는 예측이었는데 1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주에 내린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친밀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개 및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

면담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중에 각별한 관계나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예. 재판관이 된 분 중에 검찰에서 온 분은 검찰의 선후배로서 알 만한 분들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말하겠습니다. 1기 재판관 중에 최고령인 이성렬(李成烈) 재판관님은 고시 5회로서, 6년 선배인데, 그분은 헌법재판관에 임용되기 전에 국회의원과 대법관도 역임한 분이시요. 덕망이 높고 부처님 같은 성품입니다. 내가 광주 21세기 법무법인(대표 오동섭) 공동대표로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이 선배님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한바 있고 지금은 광주 원로변호사회에서 매월 만나 뵙는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변정수·김진우 재판관님인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중석(高重錫) 재판관은 2기 재판관인데, 광주의 임진란 때 영웅 고경명(高敬命)장군의 후손으로서 고재호 전 대법관의 친조카이고 나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여 서울법대에 진학하였고 내가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광주에서 군 법무관 생활도 하여 김창국 전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자주 어울렸습니다. 고 재판관은 나의 회갑문집(石泉 金亮均博士 華甲紀念全集1·2·3권)을 만들 때 간행위원장을 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철(尹永哲) 3대 소장님은 내 고등학교 1년 후배로서 고시는 동기인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 법대 재학중에 고등고시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한 수재이고 인품이 훌륭합니다. 안창호(安昌浩) 재판관은 검찰의 후배로서 광주고검장도 후배가 됩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독실한 기독교 장로로서 나와 이정재 장로와 함께 광주지도자홀리클럽이라는 기독교신자 모임의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기로 하고,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바라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 제고입니다. 대법원과 동등 이상으로 예우되어야 온당한데 동등 이하로 처우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3부 요인을 거론할 때 대법원장만 포함되고 재판소장은 제외되는 듯하여, 1기 때 재판소장은 공식행사에 불참하였습니다. 1기의 조규광(曹圭光) 소장님은 법조인으로서도 최고선배였는데 그런 예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2기 때부터 5기까지는 어떤 예우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상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가 몇 가지 주장한 것이 있는데 우선 헌법재판소의 명칭을 대헌원(大憲院)으로, 헌법재판관은 대헌관(大憲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에 임용된 초창기에 냈던 의견입니다. 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3명 증원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연구관이나, 실국장을 아주 우수한 법조인 중에서 발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